

농산물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59호
------	------

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경제문화국장
제출연월일	2023. 4. 11.

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9호
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4. 11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

1. 개정이유

- 장옥 또는 노점의 상시 사용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장의 관리를 도모하고
- 2006년 이후 변경 없는 별표1의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재 물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시지가 등으로 시장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, 별표 2의 시장별 명칭에 현황을 반영하여 시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옥 또는 노점의 상시 사용 방법의 구체화
 - 상인회 경유를 통한 시장 사용으로 시장 공동체를 공고히 함
- 나. 별표 1 시장사용료의 변경
 -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반영함
- 다. 별표 2 시장별 명칭의 변경
 - 시장별 현황을 반영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
 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약칭: 전통시장법) 제17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감사실-2801(2023.3.20.)호]
- 2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 [복지정책과-8833(2023.3.16.)호]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 [예산실-2918(2023.3.9.)호]
- 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- 가) 예고기간 : 2023. 3. 9. ~ 2023. 3. 29. 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 : 연산전통시장 상인회 의견 제출
 - 다) 검토의견
 - 시장사용료 요율 인하요청 : 충남 타 시군 조례와 논산시
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을 참고하여 일부 반영
- 5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경제정책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하여 각 상인회를 경유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축 등 전체 공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장이 직접 허가 하며, 허가 대상 중 장옥의 위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추첨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2조”를 “「논산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」 제28조”로 한다.

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의 양촌시장란, 논산공설시장란, 논산중앙시장란 및 논산화지시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논산화지중앙시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논산화지중앙시장	논산시 중앙로 492번길 20 (화지동)	1950.	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개정규정은 2024년 시장
사용료 징수분부터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지 역 경 제 과 장	유 재 락
안	전통시장활성화팀장	이 현 순
자	담 당 자	정 혜 문 (746-6029)

[별표 1]

시장 사용료 징수기준(제2조관련)

구분	기준	사 용 료(원)
장 옥	1 m ² 당	토 지 공 시 지 가 액 의 1,000분 의 20 건 물 과 세 시 가 표 준 액 의 1,000분 의 20
노 점	1 m ² 당	토 지 공 시 지 가 액 의 1,000분 의 20
연무안심시장의 경우 기준 토지 및 건물을 연무읍 안심리 14-8로 한다.		
연산시장의 경우 기준 토지를 연산면 연산리 392-8로 하고, 건물은 상인회사무실이 위치한 B동을 기준으로 한다.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장옥 또는 노점의 상시 사용) 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 <u>대하여</u> <u>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.</u> <단서 신설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조(장옥 또는 노점의 상시 사용) ① ----- ----- <u>대하여</u> <u>각 상인회를 경유하여</u> ----- -----<u>. 다만, 신축 등</u> <u>전체 공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</u> <u>논산시장이 직접 허가하며,</u> <u>허가 대상 중 장옥의 위치 배정에</u> <u>대한 사항은 추첨 등을 통하여</u> <u>결정한다.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사용료의 징수) ① (생략)</p> <p>② 제3조에 따른 상시사용의 경우 「<u>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</u>」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을 준용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사용료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 「<u>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</u>」 제28조----- -----.</p>

[별표 1] 시장사용료 징수기준(제2조관련)

구분		기준	사용료(원)
연무 안심시장	장옥	1m ² 당(월) 1m ² 당(일)	780 130
	노점	1m ² 당(일)	60
연산시장	장옥	1m ² 당(월) 1m ² 당(일)	260 40
	노점	1m ² 당(일)	20
양촌시장	장옥	1m ² 당(월) 1m ² 당(일)	130 20
	노점	1m ² 당(일)	20

[별표2] 시장별 명칭(제5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개설년월일	비고
연무안심시장	연무읍 연무로 166번길 7-19	1945.4.10	
연산시장	연산면 연산4길 10-7	1911.3.5	
양촌시장	양촌면 매죽현로 1665번길 8-1	1950.3.10	
논산공설시장	논산시 대화로 70번길 8(화지동)	1976.3.8	
논산중앙시장	논산시 중앙로 500번길 19(화지동)	1971.9.27	
< 신 설 >	< 신 설 >	< 신 설 >	
강경대흥시장	강경읍 계백로 105번길 8-4	1955.10.10	
강경젓갈시장	강경읍 금백로 45	1989.	

[별표 1] 시장사용료 징수기준(제2조관련)

구분	기준	사용료(원)
장옥	m ² 당	토지 공시지가액의 1,000분의 20 건물 과세 시가표준액의 1,000분의 20
노점	m ² 당	토지 공시지가액의 1,000분의 20
연무안심시장의 경우 기준 토지 및 건물을 연무읍 안심리 14-8로 한다.		
연산시장의 경우 기준 토지를 연산면 연산리 392-8로 하고, 건물은 상인회사무실이 위치한 B동을 기준으로 한다.		

[별표2] 시장별 명칭(제5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개설년월일	비고
연무안심시장	연무읍 연무로 166번길 7-19	1945.4.10	
연산시장	연산면 연산4길 10-7	1911.3.5	
< 삭 제 >	< 삭 제 >	< 삭 제 >	
< 삭 제 >	< 삭 제 >	< 삭 제 >	
< 삭 제 >	< 삭 제 >	< 삭 제 >	
논산화지중앙시장	논산시 중앙로492번길 20(화지동)	1950.	
강경대흥시장	강경읍 계백로 105번길 8-4	1955.10.10	
강경젓갈시장	강경읍 금백로 45	1989.	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해당없음

나. 추계결과

- 해당없음

3. 작성자

지역경제과장 유 재 락

입법예고 의견제출

1. 제출자 : 연산전통시장상인회
2. 의견내용

조례안 내용	의 견
별표 1 (시장 사용료 징수기준)	<p>○ 시장사용료 인상에 대한 걱정으로 시장사용료 징수기준 완화요청</p> <p>(조례안: 토지 공시지가액 및 건물 과세 시가표준액의 25/1,000 → 요청안: 12.5/1,000)</p>

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(약칭: 전통시장법)

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 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(약칭: 공유재산법 시행령)

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. 이 경우 제1호 본문,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,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,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토지: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(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,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

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를 적용한다. 다만,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(地價)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.

2. 주택: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.

가. 단독주택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

나. 공동주택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

다.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
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: 「지방세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.